



연 세 대 학 교

국 제 처

수신자 수신자 참조

(경유)

제 목 외국인 유학생 단순 동영상 강의 수강 제한 관련 협조 요청

1. 관련: 교육부 교육국제화담당관-3405 (2025.9.15.) 「2025년 교육국제화역량 인증제 및 외국인 유학생 유치·관리 실태조사 시행 공고」
외국인 유학생 및 어학연수생 관리 규정 제22조 (수강의 의무)
2. 교육부의 지침에 따라 2026-1학기부터 외국인 유학생의 단순 동영상 강의 수강이 일부 제한되므로, 이와 관련하여 교내 각 기관은 다음과 같이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주요 내용

- 단순 동영상 강의: **비대면 비실시간 동영상 100%**로 구성된 강의(학사포털 수강 신청 시스템 - 원격강의여부가 '**비대면(동영상)**'으로 표시된 강의)

단순 동영상 강의 판단 기준 - 교육부 지침 발췌

1. **시험 주간 제외 전체 수업시간(주차)이 비대면·비실시간 수업인 경우**
2. 교수자와 학생 동시 접속 실시간 수업: 단순 동영상 강의에 포함되지 않음
3. 시험주간 제외한 전체 수업 시간이 비대면·비실시간이라면 퀴즈나 과제를 포함하더라도 단순 동영상 강의로 간주

- 대상: 학위과정 외국인 유학생 중 **유학(D-2) 비자를 소지한 자**
- 제한사항: 2026-1학기부터 **학위과정 외국인 유학생 중 유학(D-2) 비자를 소지한 자**는 해당 학기의 총 신청학점 중 단순 동영상 강의 학점 비율이 **30% 이하**가 되도록 수강신청 하여야 함.
- 학기 중 수강과목을 철회하는 경우, 수강철회 후에도 해당 학기의 총 학점 중 단순 동영상 강의 학점 비율이 **30% 이하**가 되어야 함.
- (석사·박사과정생 예외사항) 해당 학기 총 신청학점의 30% 이내 또는 학기당 1과목까지 단순 동영상 강의 이수 가능
- 위의 제한사항은 정규학기(1학기, 2학기)에만 적용되며, 계절학기(여름, 겨울)에는 적용되지 않음.

나. 각 기관 협조 요청 사항

- 불임의 유학생 안내문(국·영문)을 참고하여 수강신청 안내, 신입생 오리엔테이션, 재학생 학사지도 등을 통해 학위과정 외국인 유학생에게 관련 내용 안내
- 강의 개설 시 학사포털 시스템에 **단순 동영상 강의 구분(원격강의여부)을 반드시 입력**하고, 졸업 필수과목의 경우 가급적 단순 동영상 강의 개설 지양

국 제 처 장



수신자 대학원장(교학팀장), 연합신학대학원장(행정팀장), 경영전문대학원장(행정1팀장), 국제학대학원장(행정팀장), 정보대학원장(행정팀장), 커뮤니케이션대학원장(행정팀장), 사회복지대학원장(행정팀장), 법학전문대학원장(행정팀장), 교육대학원장(행정팀장), 행정대학원장(행정팀장), 공학대학원장(행정팀장), 언론홍보대학원장(행정팀장), 법무대학원장(행정팀장), 생활환경대학원장(행정팀장), 경제대학원장(행정팀장), 심리과학이노베이션대학원장(행정팀장), 인공지능융합대학원장(행정팀장), 문과대학장(행정팀장), 상경대학장(행정팀장), 경영대학장(행정1팀장), 이과대학장(행정팀장), 공과대학장(행정1팀장), 생명시스템대학장(행정팀장), 인공지능융합대학장(행정팀장), 신과대학장(행정팀장), 사회과학대학장(행정팀장), 음악대학장(행정팀장), 생활과학대학장(행정팀장), 교육과학대학장(행정팀장), 학부대학장(행정1팀장), 언더우드국제대학장(행정팀장), 약학대학장(행정팀장), 글로벌인재대학장(행정팀장), 융합보건의료대학원장, 보건대학원장, 간호대학원장, 의과대학장, 치과대학장, 간호대학장, 교무처장(학사지원팀장), 정보통신처장(학사정보팀장)

12/19

차장 정용화

글로벌원스톱
서비스센터팀장 이은정

센터장 염상훈

국제처장 김용찬

협조자 학사지원팀장 안지현